

kotra 통상정보

제50호 [15-50] 2015.5.7 Biweekly Report

주간 포커스

美 무역촉진권한(TPA)

주요내용 및 향후일정

주요국 통상 이슈

- I. FTA · 통상정책
- II. 통관 · 수입규제
- III. TBT
- IV. 기타무역장벽

통상 캘린더



Contents

1 주간 포커스

美 무역촉진권한(TPA)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

2 주요국 통상 이슈

I. FTA · 통상정책

■ FTA 등 지역협정

- 러시아-베트남,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
- 인도-호주, FTA 안건 회담 진행

■ 무역 · 산업정책

- 카자흐스탄-중국 산업협력 합의
- 일본, LNG 연료 트러플 확대 보급 지원
- 인도, 국제금융센터 가이드라인 발표
- 인도, 5개년 대외통상정책 발표
- 인도-방글라데시, 개정 무역 협정 승인
- 이란 및 주요 6개국, 이란 핵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합의
- 미국,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 결정
- 미국, 2015년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

II. 통관 · 수입규제

■ 수입규제

- 미국, 섬유산업 수입단속 강화 법률 발의

■ 세이프가드

- 우크라이나, 수입 심리스강관 · 고압파이프 세이프가드 일몰재심 산업피해 판정

■ 반덤핑 · 상계관세

- 호주, 중국산 태양광 모듈 · 패널 반덤핑 조사 취소 제안
- 일본, 중국산 TDI 반덤핑 관세 부과

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Contents

- 인도네시아, 한국 외 3개국 심리스강관 잠정반덤핑 관세 취소
- 미국, 중국산 석유 파이프 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
- 미국, 중국산 에어컨 밸브 덤핑 행정재심 예비판정
- 미국, 호주산 실리망간 덤핑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
- 미국, 중국산 글리신 덤핑 행정재심 예비판정
- 미국, 캐나다산 강광택지 보조금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
- 미국, 중국·트리니다드 토바고산 멜라민 보조금 혐의인정 예비판정
- 미국, 중국산 53피트 미국 내수용 일반 컨테이너 덤핑 및 보조금 혐의인정 최종판정
- 캐나다, 중국산 철제 선반 반덤핑·보조금 재조사
- 미국, 한국 외 5개국 PC 강철선제품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유지 결정

III. TBT

■ 환경

- 미국, 유해 화학물질 포함 아동용품 경고표시 의무화
- 미국,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기록관리 규정 변경 제안

IV. 기타무역장벽

■ 투자장벽

- 러시아, 사업자 재등록 관련 법 제정

■ 지식재산권

- 미국, 특정 가변 밸브 구동 장치 및 장치 사용 자동차 관세법 위반 조사 개시

3 통상 캘린더

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1 주간 포커스

美 무역촉진권한(TPA)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



출처 : KOTRA 글로벌 윈도우

본 원고는 KOTRA 글로벌 윈도우 통상속보 내용과 무역관 작성 자료를 일부 발췌·취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지난 4월 16일, 미 의회는 TPP 협상의 주요 열쇠인 무역촉진권한(TPA) 회생 법안 발의에 합의했다. 이후 상원 재무위원회(22일), 하원 세입위원회(23일)가 각각 TPA 법안을 가결하였고, 5월 내 상·하원 모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.

TPA 회생 법안이 발효될 경우 2018년 7월 1일까지 TPA가 연장되며, 미국 의회가 최종 협정문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국들이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이에 KOTRA는 TPP의 ‘주요 열쇠’로 주목받고 있는 TPA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.

□ 美 의회, 무역촉진권한(TPA) 회생 법안 발의

무역촉진권한(TPA ; Trade Promotion Authority) 란?

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이 금지됨. 신속협상권(Fast Track)으로도 불림.

○ 양원 무역촉진권한(TPA) 회생 법안 발의

- 4월 16일 상원 재무위원회(Finance Committee)와 하원 세입위원회(Ways and Means Committee)가 TPA를 회생시키는 법안을 발의
- 법안명은 ‘초당적 양원 무역 우선순위 및 책임 법(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)이며, TPA-2015 법안으로 통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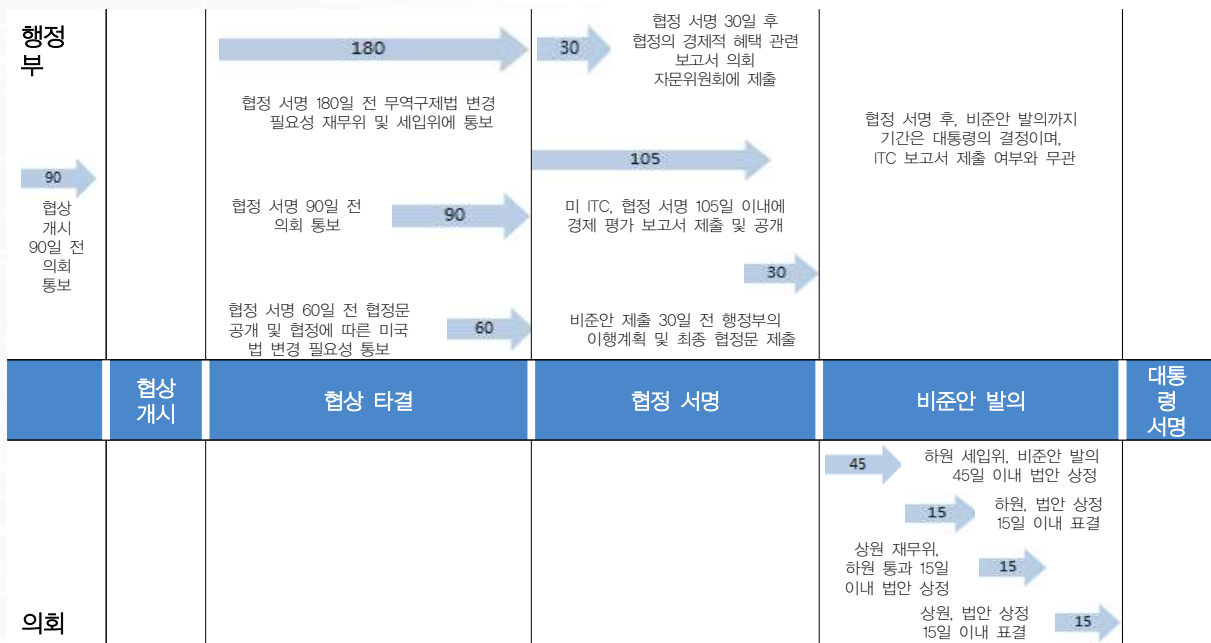
○ TPA-2015, 2018년 7월까지 미국 행정부에 TPA 부여

- TPA 회생 법안이 발효될 경우, 2018년 7월 1일까지 TPA가 연장되며 대통령이 추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* 2021년 7월 1일까지 연장 가능

* 대통령이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연장 요청을 해야 하며, 상·하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연장 거부 가능

□ TPA-2015 법안에 따른 무역협정 처리 절차

〈TPA-2015 법안에 따른 무역협정 처리 절차〉



자료원 : TPA-2015법안, 미국 의회조사국(CRS)

○ TPA-2015 의회의 비준 절차는 기존 TPA와 동일

- TPA-2015은 최초 TPA 법안인 1974년 통상법(Trade Act of 1974)의 섹션 151에 따라 기존 비준 절차를 유지
- 대통령이 비준안을 발의할 경우, 하원 세입위원회는 45일(회기일) 내 비준안에 따른 다른 법 개정 등 논의를 마치고 법안 상정 필요
- 법안 상정 이후, 하원 본회의는 15일(회기일) 내 표결을 해야 하며 표결 당일 법안 논의는 20시간으로 한정
- 상원 재무위원회는 하원 통과 법안에 대해 15일(회기일) 내 상정해야하며 상원 본회의 역시 15일 내 표결 필요

○ TPA-2015, 무역협정 투명성 강화 위해 통보 및 보고 의무 추가

- 기존 TPA의 통보 및 보고 의무* 유지

* 협상 개시 90일 전 통보, 협정 서명 90일 전 통보, 서명 각각 60일, 180일 전 미국 법 변경 필요성 및 무역 구제 법 변경 필요성 통보 등

- 추가로 미국 행정부는 협정 서명 60일 전 USTR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협정문을 공개하도록 규정
- 또한, 미국 의원들이 협상 중인 협정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승인된 관계자도 열람 가능

- 美 의회, 특정 무역협정에 대한 TPA 권한 철회 가능
 - 특정 무역협정이 의회가 제시한 협상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, 상원은 재무위, 하원은 세입위를 통해 TPA 권한 철회 결의안을 상정 가능
 - 해당 결의안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, TPA 권한 철회 가능

□ TPA-2015의 신규 무역협상 목표

TPA의 무역협상 목표(Negotiating Objectives)

미국 의회가 TPA를 통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지만, 의회가 제시한 협상목표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도록 법안을 통해 주요 협상 분야 및 범위를 성문화

-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교역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
 - 디지털교역 관련 기업기밀 보호, 사이버안보 강화,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등 협상 목표를 확대
 - 디지털교역 및 서비스 수출에 중요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, 처리 및 저장 등의 중요성을 언급
 - 서버 강제 현지화 등을 방지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교역 강화
- 공기업의 무역 왜곡 방지
 - 현재 TPP에 참여 중인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등을 고려해 국유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및 무역 왜곡 행위를 방지
- 인권 보호 강화
 - 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의 투명성, 올바른 통치 등을 위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규범을 촉진

□ 기타 특기사항

- 환율시장 개입 관련 법적 구속력 없는 피상적 목표 제시
 - 환율시장 개입에 대한 협상목표는 협력체계 마련 등 모호한 목표 제시
 - 일부 민주당 의원, 미국 노조 및 자동차업계가 집행력 있는 환율개입 방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
- 무역협상에 대한 의회 자문위원회를 신설
 - 상·하원 내 무역협상 자문위원회(Advisory Committee)를 신설하고 무역협상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해 행정부의 무역협정 투명성 강화 노력
- TPA를 통해 무역협정이 비준되더라도 미국 국내법 변경 불가능
 - TPA-2015은 최초로 주권(sovereignty) 관련 챕터를 추가해 TPA를 통해 비준된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국내법이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
 - 국내법 변경을 위해서는 정규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야 가능

□ 상·하원 위원회 논의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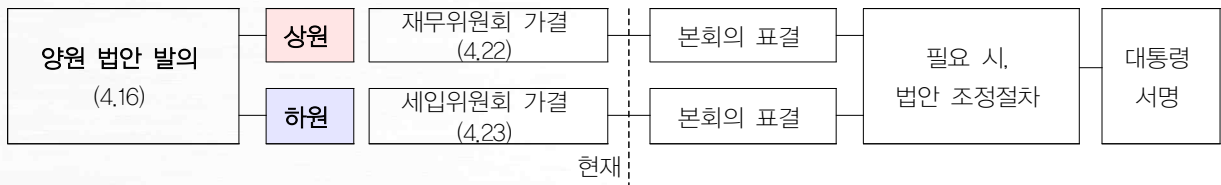
- 상원 재무위원회, 민주당에서 7명이 찬성하며 수월하게 통과
 - 상원 재무위원회의 TPA 회생법안 표결에서 2건의 수정안이 채택된 가운데 찬성 20표, 반대 6표로 수월하게 통과
 - 리처드 버(Richard Burr)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섬유시장 타격에 대한 우려로 공화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
 - 민주당에서는 7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으며, 반대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환율시장 개입에 대한 협상목표 제시가 부족하다고 반발
- 하원 세입위원회, 민주당 찬성 2명에도 통과 성공
 - 세입위원회 간사 샌더 레빈(Sander Levin)의원이 현 TPA 법안의 환율개입 조항이 약하다며 대체 법안을 내세웠지만, 폴 라이언(Paul Ryan) 세입위원장이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면서 무산
 - 세입위원회 민주당 의원 중 론 카인드(Ron Kind)와 얼 블루메나워(Earl Blumenaur)의원만이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이 수적 우위로 통과
- 환율시장 개입, 주요 쟁점으로 부상
 - 민주당 의원들이 환율개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, 전 USTR 대표 롭 포트먼(Rob Portman) 공화당 의원까지 환율개입 방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가세
 - 해당 수정안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상원 재무위에서 채택에 실패했지만,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(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)는 근접한 표 차이가 본회의 논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
 - 하원에서도 환율 관련 3건의 수정안이 올라와 주요 쟁점으로 부각
 - 차기 상원 민주당 대표 내정자인 척 슈머(Chuck Schumer) 의원은 환율개입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'세관 허가 연장법' (Customs Reauthorization Bill)의 수정안으로 제안해 향후 상원 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
□ 향후 일정 및 전망

- 상·하원, 5월 내 법안 표결 진행 예상
 - 미국 주요 언론은 상·하원이 5월 휴정 전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
 - 하원의 5월 둘째 주 휴정으로 인해, 상원이 먼저 표결 진행 유력

- 양원 모두 “TPA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” 언급
 - 단, 엘리자베스 워렌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자리 감소, ISD조항 등을 이유로 반발
- 상·하원, 법안 상이할 경우 조정절차 필요
 - 본회의 표결 → 법안 조정절차(필요 시) →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거친 후 TPA 법안 발효 예정

〈TPA 법안 승인 절차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〉



I. FTA · 통상정책

□ (지역협정) 러시아-베트남,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

- 응웬 쯔 응 베트남 총리,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후 올해 상반기에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
 - (내용)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이에 대해 중요한 사안들은 이미 합의 했으며 조속한 협정을 기대 중
 - 올해 초 러시아는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아르메니아,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EEU를 출범했으며,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EU의 외연 확대를 시도 중

(출처 : 보이스오브러시아 등)

□ (지역협정) 인도-호주, FTA 안건 회담 진행

-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,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과 FTA를 안건으로 회담을 진행(4.13)
 - (배경) 작년 말 양국 총리가 안보 협력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, 향후 무역 협정의 발판을 마련함.
 - (내용) 호주 외무장관은 현재 호주와 인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올해 안에 인도와의 FTA 체결 의사를 표명함.
 - 올해 중으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인도-호주 간 해군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

(출처 : Business Line ; 뭄바이 무역관 종합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일본, LNG 연료 트럭 확대 보급 지원

- 일본 정부, LNG 연료 트럭에 대한 설비환경 및 규격을 마련하여 확대보급 지원(4.11)
 - (배경) 현재 일본 내에서 대부분 경유 트럭을 운행하고 있고, CNG트럭이 있으나 보급대수가 약 4만대에 머물러 있음.
 - (내용) 일본 경제산업성은 CO₂ 배출량 삭감 실현을 목표로 자동차 기업들과 공동 연계를 통해 올해까지 전용부품의 규격*을 책정할 예정
 - * 차체 내부에 보관 가능한 LNG 탑재 탱크 규격, LNG 충전소에 설치된 탱크에 관한 보안 규칙 완화, 일본 내 CNG 충전소의 개량 촉진 등
 - 공급처가 분산된 LNG 설비환경 정비를 통해 ' 17년부터 일본시장에 본격 투입할 예정

(출처 : 일본경제신문 ;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카자흐스탄-중국 산업협력 합의

- 카림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, 중국과 236억 달러 규모의 산업협력에 합의함 (3.28)
 - (내용) 고속도로, 도시철도, 수력, 자동차 등 총 33건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카자흐스탄의 신 경제정책(누를리 줄)에 대한 지원도 포함됨.
 - 중국이 추진 중인 ‘신 실크로드’ 프로젝트에 있어 카자흐스탄이 주요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

(출처 : <http://af.reuters.com>, The Astana Times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인도,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가이드라인 발표

- 인도 증권거래위원회,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가이드라인 발표(3.22)
 - (내용) 인도 정부는 구자라트 기프트시티*를 경제특구화 하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, 기프트시티가 첫 번째 국제금융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함.
 - * 기프트시티 : 구자라트주 국제금융 기술도시로 모디총리가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시티
 -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해외기업이 주식예탁증서와 채무증서를 통하여 경제 구역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허가함.
 - 기업의 은행대출금 주식 전환 시 적정 가격을 책정하여 기업의 고충을 덜어줌.

(출처 : The Financial Express ; 뭄바이 무역관 종합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인도, 5개년 대외통상정책 발표

- 인도 상공부, 5개년 대외통상정책을 발표함(4.1)
 - (내용) ‘메이크 인 인디아’, ‘디지털 인디아’ 계획 기조에 맞춘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안들이며 크게 재화 수출 제도, 서비스 수출 제도, 수출 유공업체제도, 수출 촉진용 자본재 제도로 나누어짐.
 - (세부 내용) ①무역원활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‘서류 없는 무역’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 제도 확대 시행 ②수출입 관련 신속한 승인을 위해 부처 간 온라인 회의 도입 ③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 구축

(출처 : 인도 상공부 발표자료 및 인도 주요 신문자료 ; 뭄바이 무역관 종합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인도-방글라데시, 개정된 무역 협정 승인

- 인도 정부, 방글라데시 내각과 개정된 무역 협정을 승인하여 역내 무역장벽 해소의 계기 마련(4.7)
 - (배경) 방글라데시가 네팔과 부탄에서 트럭을 통해 물품을 들여올 시 인도 접경 지역에서 물품을 하역한 뒤에 가져와야하는 번거로움 존재
 - (내용) 인도는 방글라데시를 통해 미얀마로, 방글라데시는 인도를 통해 네팔, 부탄으로 물품 운송이 가능해짐
 - 동 협정이 시행되는 동안 양국이 동일한 이용료와 수수료를 지불하여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됨
 - 개정된 동 협정은 양국 중 한 국가가 반대하지 않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됨.

(출처 : India Times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이란 및 주요 6개국, 이란 핵 관련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합의

- 이란 · 미국 · 영국 · 프랑스 · 러시아 · 중국 · 독일, 이란 핵개발 및 제재와 관련하여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(JCPOA)을 6월 3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(4.2)
 - (내용) 이란은 원심분리기 및 농축 우라늄 감축과 중수로 시설의 재건설에 대해 합의했으며,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핵시설 사찰도 수용함.
 - 미국, EU, UN은 IAEA의 이행 확인 후 對이란 경제제재를 철폐할 예정이며 추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미국과 EU는 제재를 재적용할 예정임.
 -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는 4월 14일 양당이 합의한 이란 핵합의 승인법 수정안을 통과시킴.
 - 동 법안에 따르면, 미국 의회에게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의 심사 및 승인 투표 권한을 부여하나,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함.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미국,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 결정

- 미국 오바마 대통령, 쿠바를 국무부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(4.14)
 - (배경) 쿠바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서 중대한 걸림돌이었으며 쿠바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보장함.
 - (내용)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, 반대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 -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對쿠바 경제 및 금융제재 때문에 제재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□ (무역 · 산업정책) 미국, 2015년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

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, 2015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함(4.1)
 - (내용) ' 10년부터 4년간 별도로 출간하던 위생검역보고서를 통합했으며, 해외 무역장벽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함.
 -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출업체에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형성되었으며, 작년에는 對한의 미국 농산물 수출 성장률이 타국 대비 7배가 높은 31.2%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 - 한국의 화학물질 평가법, 전기안전기준, 국정원 사이버보안적합성검증 등을 무역 기술장벽으로 지목했으며, 신용정보 저장 제한 및 한국 고유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전자상거래 저해 장벽으로 규정함.
 - 미국산 가금류 및 감자 수입 금지조치와 방송, 쌀, 보리, 발전 출판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.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II. 통관 · 수입규제

□ (수입규제) 미국, 섬유산업 수입단속 강화 법률 발의

- 미국 의회, 미국 섬유 제조산업 보호 관련 섬유집행안보법 발의(3.26)
 - (내용)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업체가 잘못된 정보*를 제공하여 무역 특혜를 받고자 할 경우 수입 제품을 압류 및 차압
 - * 부정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원산지 표기, 위조서류 제출, 잘못된 주소 제공, 제품 통관시 구비서류 및 정보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
 - 재무부는 동 법률 위반 수출업체의 이름과 환전 위험이 높은 국가 리스트를 연방공보를 통해 공시야 함.
 -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규정 위반 벌금을 섬유 및 의류 단속 관련 전문 인력 훈련을 위해 사용해야 함.
 - 세관 섬유 담당 집행 부서에 특정 수 이상의 직원을 배치해야 함.
 - 미국 대형 15개 항만 인력 중 특정 수의 직원이 섬유 및 의류 수입 관련에 대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세관 및 국경보호국 커미셔너가 보증해야하며, 섬유 수입 관련 전문 인력의 25%를 증강해야 함.
 - 세관 및 국경보호국과 상무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섬유 및 의류의 수입을 추적하는 전자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함.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□ (세이프가드) 우크라이나, 수입 심리스강관 · 고압파이프 세이프가드 일몰재심 산업피해 판정

- 우크라이나 정부, 수입 심리스강관 및 고압파이프에 대한 세이프가드 일몰재심 산업피해 판정에서 ' 15.4.1~' 16.9.30일까지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결정(4.1)

〈국가별 실시 쿼터제〉

(단위 : 톤)

수출국	2015.4.1~2015.9.30	2015.10.1~2016.9.30
러시아	6,830	13,865
오스트리아	1,408	2,858
폴란드	632	1,284
루마니아	121	245
슬로바키아	98	199
인도	41	84
중국	28	56
기타	450	914
합계	9,608	19,504

- (' 14.9월)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

(출처 :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; 베이징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) 호주, 중국산 태양광 모듈·패널 반덤핑 조사 취소 제안

- 호주 반덤핑위원회,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및 패널이 호주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조사 취소를 제안(4.8)
 - 해당품목 HS코드 : 8541.40, 8501.61, 8501.62, 8501.63, 8501.64
 - (' 14.5월) 반덤핑 조사 개시

(출처 :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; 베이징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) 일본, 중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(TDI) 반덤핑 관세 부과

- 일본 정부, 중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(TDI)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고(4.8)
 - 해당 품목 :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(TDI, Toluene Diisocyanate)
 - 해당 품목 HS코드 : 2929.10-1000
 - (' 14.12월) 잠정반덤핑 관세 부과

(출처 :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; 베이징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) 인도네시아, 한국 외 3개국 심리스강관 잠정반덤핑 관세 취소

- 일본 정부, 한국·중국·일본·싱가포르산 심리스강관에 대한 81%의 잠정반덤핑 관세를 취소한다고 공고(4.8)
 - 해당 품목 HS코드 : 7304.29-1000, 7304.29-3000

(출처 :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; 베이징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) 미국, 중국산 석유 파이프 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

- 미국 상무부, 중국산 석유 파이프가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최종판정(4.8)
 - (내용) 중국산 석유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소할 경우 99.14%의 반덤핑 세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.
 - 해당 품목 HS코드: 7304.29-1010, 7304.29-1020, 7304.29-1030
 - (' 14.12월) 반덤핑 조사 개시

(출처 :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; 베이징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) 미국, 호주산 실리망간 덤핑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

- 미국 ITC, 호주산 특정 실리망간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예비판정(4.3)
 - (내용) 호주산 특정 실리망간에 대한 반덤핑 여부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
 - 제소업체 : United Steel, Paper and Forestry, Rubber, Manufacturing, Energy,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(USW), Domtar사, Finch Paper사, Packaging Corporation of America, P.H. Glatfelter사(PA)
 - 해당 품목 : 실리망간(Silicomanganese)
 - 해당 품목 HS코드 : 7302.30.0000
 - 향후 일정 : (7월 29일)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, (10월 13일)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, (11월 27일) ITC 최종판정, (12월 3일) 상무부와 ITC,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하달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) 미국, 중국산 글리신 덤핑 행정재심 예비판정

- 미국 상무부, 중국산 글리신에 대한 덤핑 행정재심 예비판정(4.9)
 - (내용) Baoding Mantong Fine Chemistry사의 반덤핑 세율을 784.48%로 예비판정
 - 해당 품목 HS코드: 2922.49-4020
 - (' 14.4월) 반덤핑 행정재심 조사 개시

(출처 :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; 베이징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) 미국, 캐나다산 강광택지 보조금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

- 미국 ITC, 캐나다산 강광택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예비판정(4.10)
 - (내용) 동 판정으로 캐나다산 강광택지에 대한 보조금 여부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임.
 - 제소업체 : The Coalition for Fair Paper Imports, United Steel, Paper and Forestry, Rubber, Manufacturing, Energy,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
 - 해당 품목 : 강광택지 (Supercalendered paper, SC paper)
 - 해당 품목 HS코드 : 4802.61.3050, 4802.61.3010, 4802.62.3000, 4802.62.6020, 4802.69.3000
 - 향후 일정 : (5월 22일)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, (8월 5일)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, (9월 21일) ITC 최종판정, (9월 28일) 상무부와 ITC,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하달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□ (상계관세) 미국, 중국·트리니다드토바고산 멜라민 보조금 혐의인정 예비판정

- 미국 상무부, 중국·트리니다드토바고산 멜라민에 대해 보조금 혐의인정 예비판정(4.14)
 - 제소업체 : Cornerstone Chemical사
 - 해당 품목 : 멜라민 (Melamine)
 - 해당 품목 HS코드 : 2933.61.0000
 - 예비 보조금율 : 중국 147.62~150.52%, 트리니다드 토바고 27.48%
 - 향후 일정 : (8월 24일) 미국 상무부 보조금 최종판정, (10월 8일) ITC

보조금 최종판정, (10월 15일) 상무부와 ITC 상계관세 부과 명령 하달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 · 상계관세) 미국, 중국산 53피트 미국 내수용 일반 컨테이너 덤핑 및 보조금 혐의인정 최종판정

- 미국 상무부, 중국산 53피트 미국 내수용 일반 컨테이너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 인정 최종판정(4.13)
 - 제소업체 : Stoughton Trailers사
 - 해당 품목 : 53피트 내수용 일반 건식 컨테이너*(53ft Domestic Dry Containers)
 - * 해상무역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20피트, 40피트 국제표준 컨테이너와 달리 북미 내륙운송은 주로 48피트, 53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하므로 53피트 컨테이너는 내수용 컨테이너라 지칭함.
 - 해당 품목 HS코드 : 8609.00.0000, 9803.00.50
 - 반덤핑 세율 : 107.19~111.22%
 - 상계관세율 : 17.13~28.00%
 - 향후 일정 : (5월 26일) 미국 ITC 덤핑 및 보조금 최종판정, (6월 2일) 상무부와 ITC, 관세부과 명령 하달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 · 상계관세) 캐나다, 중국산 철제 선반 반덤핑 · 보조금 재조사

- 캐나다 관세청, 중국산 철제 선반에 반덤핑 · 보조금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공고(4.3)
 - (내용) 재조사를 통해 중국산 철제 선반의 정상가치, 수출가격 및 상계금액을 업데이트 할 예정
 - 해당품목 HS코드 : 7308.90-9010, 7308.90-9020, 7308.90-9030, 7308.90-9040, 7308.90-9050, 7308.90-9060, 7308.90-9091, 7308.90-9092, 7308.90-9093, 7308.90-9094, 7308.90-9095, 7308.90-9096, 7308.90-9099
 - (10.9월) 반덤핑 · 보조금 조사 개시

(출처 :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; 베이징 무역관 종합)

□ (반덤핑 · 상계관세) 미국, 한국 외 5개국 PC 강철선제품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유지 결정

- 미국 ITC, 한국 · 브라질 · 인도 · 일본 · 멕시코 · 태국산 PC 강철선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함(3.31)
 - (내용)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내용* 중 ‘5년간 검토’ 조항에 따른 결정으로, 현재 적용중인 관세 폐지시 미국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결론지음.
 - * 미국 ITC가 특정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5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함. 특정 제품에 대해 5년간 검토가 이루어지는데, 공정화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검토여부를 결정함.
 - 해당 품목 : P.C(Prestressed Concrete) Steel Wire Strand
 - 해당 품목 HS코드: 7312.10-
 - (’ 14.5월) 반덤핑 행정재심 조사 개시

(출처 :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)

Ⅲ. TBT

□ (환경) 미국, 유해 화학물질 포함 아동용품 경고표시 의무화

○ 미국 의회, 우선순위 화학물질 포함 아동용 제품에 경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승인 대기중

- (배경) 미네소타 주에서 ‘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법(TFKA)’ 법안이 ’09년 통과되었으며, 미네소타 주법으로 등재되었으나 한계점을 해결하고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*이 발의됨(3.9)

* 법안 원안 : <http://trackbill.com/s3/bills/MN/89/HF/1553/texts/introduction.pdf>

- TFKA 법안에 따르면 미네소타 보건부는 아동용 제품에 존재하는 고위험 화학물질* 목록과 우선순위 화학물질**목록을 만들고, 3년마다 재검토 및 수정해야 함.

* 고위험 화학물질 :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생식 또는 인체발달에 해를 주는 독성물질, 농축되어 사라지지 않는 독성물질로서 아동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을 뜻함.

** 우선순위 화학물질 : 고위험 화학물질 중 미국 연방환경청(EPA)이 지정한 대량생산물질이면서
①혈액, 소변, 모유 등 체액에서 발견 ② 어류, 야생동물, 자연환경에 존재 ③ 샘플링 분석에서 가정 내 먼지, 실내공기, 식수 또는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.

- (내용) 법안이 통과되면 ①2016년 1월이나 ② 화학물질이 우선순위 화학물질로 지정된 120일 후부터 미네소타 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 중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아동용 제품을 제조·유통하는 업체는 경고문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.

- (경고문구) ‘이 제품은 우선순위 화학물질(해당물질 이름 명시)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보건부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것으로 의심됨’

- 경고문구는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, ’16.7.1일부로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아동용 제품의 판매는 금지됨.

(출처 :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종합)

□ (환경) 미국,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기록관리 규정 변경 제안

- 미국 환경보호청(EPA),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기록관리 규정 변경 제안 (3.25)
 - (배경) 미국 EPA가 나노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기록관리 시행규칙을 제안했으며, 해당 규제 변경안을 4월 6일 미국 관보를 통해 공개함. 7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
 - 동 규제안은 나노물질의 인체유해성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며 유해성 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
 - (규제대상 나노물질) 섭씨 25도와 기압 환경에서 고체형태를 유지하며 1~100나노미터(nm) 크기에서 물질의 고유의 성질 및 속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
 - (규제대상 업체) ① 최종규정 발표 전 3년 이내에 나노물질을 개별형태로 제조, 수입, 처리한 업체 ② 최종규정 발표 후 나노물질을 개별형태로 제조, 수입, 처리할 계획인 업체
 - (정보제공 기한) 최종규정 발표 전(3년 이내)에 나노물질을 취급한 업체는 최종 규정 발표 후 6개월 내로 EPA에 나노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최종규정 발표 후에는 나노물질 취급 135일 전에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함.
 - (제공 정보) ① 나노물질의 명칭, 화학성분, 크기, 형태, 표면 교정 등 ②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③ 제조에 따른 불순물 및 부산물 비중 ④ 생산량, 제조 및 취급 과정 ⑤ 제조과정에서 나노물질에 노출된 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⑥ 보호장비, 안전교육 등 위험관리체계 ⑦ 건강 및 환경 영향 관련 정보 등
 - (제외 대상) ① 소규모 제조 및 처리 업체 ② 나노물질을 제품의 일부분, 부산물, 중간재로만 수입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③ R&D를 목적으로 나노물질을 수입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④ 식품, 식품첨가제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, 살충제 물질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IV. 기타무역장벽

□ (투자장벽) 러시아, 사업자 재등록 관련 법 개정

- 러시아, 러시아 소재 외국기업 본부 및 지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자 재등록 관련 법을 개정
 - (내용) 금융권과 민간 항공분야를 제외한 러시아 주재 모든 외국인 기업은 ' 15년 4월까지 사업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함.
 - 기한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경우 미등록 회사가 되며, 해당 기업 외국인 근무자의 노동비자는 무효화됨.
 - 법 개정 사실이 제대로 공지·홍보되지 않고, 서류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외국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.

(출처 : 모스크바 타임즈)

□ (지식재산권) 미국, 특정 가변 밸브 구동 장치 및 장치 사용 자동차 관세법 위반 조사 개시

- 미국 ITC, 특정 가변 밸브 구동 장치 및 장치 사용 자동차에 관세법 제337조*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개시(4.9)
 - * 관세법 제 337조 :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, 지적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,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.
 - (내용) 제소업체가 ITC에게 피소업체에 대해 수입 배제명령과 중지명령 하달을 요청
 - (제소업체) 미국 Jacobs Vehicle Systems사
 - (피소업체) 미국 FCA사, 멕시코 FCA사, 이탈리아 Sata-Societa Automobilistica Tecnologie Avanzate S.p.A.사, 세르비아 Fiat Automobili Srbija Doo사, 영국 Fiat Chrysler Automobiles N.V.사

(출처 : 워싱턴 무역관 종합)

04 통상 캘린더

2015/APRIL

한: 한국 미: 미국 WTO: WTO EU: EU
중: 중국 일: 일본 기타: 기타

일 Sunday	월 Monday	화 Tuesday	수 Wednesday	목 Thursday	금 Friday	토 Saturday
			1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4.1, 브뤼셀)	2	3	4
5	6	7	8	9	10	11
12	13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4.13-14, 브뤼셀) 기타 한중일 FTA 제 7차 실무협상 (4.13-17, 서울) 일기타 일본-터키 EPA 2차 교섭회의 개최 (4.13-17, 앙카라)	14 기타 G7 외무장관 회담 (4.14-15, 뤼베크)	15 EU EU 의회 본회의 (4.15, 브뤼셀) 미일 미국-일본 TPP 실무자 협의(4.15, 도쿄)	16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4.16, 브뤼셀)	17	18
19 미일 미국-일본 TPP 각료 회담(4.19-21, 도쿄)	20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4.20, 브뤼셀)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 (4.20, 브뤼셀) 기타 Post-2015 개발의 제 정부간 협상 4차 회의 (4.20-24, 뉴욕)	21 WTO 무역정책 리뷰 : (4.21-23)	22 WTO 분쟁해결기구(DSB)회의	23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4.23, 브뤼셀) 기타 12개국 TPP 수석 협상관 회의 (4.23-26, 미국)	24	25
26	27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4.27-30, 스트라스부르) EU EU 의회 본회의 (4.27-30, 스트라스부르)	28	29	30		

05 통상 캘린더

2015/MAY

한: 한국 미: 미국 WTO: WTO EU: EU
중: 중국 일: 일본 기타: 기타

일 Sunday	월 Monday	화 Tuesday	수 Wednesday	목 Thursday	금 Friday	토 Saturday
					1	2
3	4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5.4-7, 브뤼셀)	5 한기타 한-베 FTA 정식 서명(5.5, 하노이)	6	7	8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 (5.8, 브뤼셀)	9
10 기타 APEC 제 2차 고위 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(5.10-21, 보라카이)	11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5.11, 브뤼셀)	12	13	14	15	16
17	18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5.18-21, 스트라스부르)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 (5.18, 브뤼셀)	19	20 WTO 분쟁해결기구(DSB)회의	21	22	23 기타 APEC 통상장관회의 (5.23-24, 보라카이)
24	25	26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5.26, 브뤼셀)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 (5.26, 브뤼셀) 기타 TPP 장관급 회의 (5.26-28, 필리핀)	27 EU EU 의회 본회의 (5.27, 브뤼셀)	28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(5.28, 브뤼셀)	29 일기타 일본-EPA 정기수 뇌협약(5.29, 도쿄)	30
31						

『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인증정보 제공 사업』 안내

수출 처음 하시는데 인증이 어렵다구요?
맞춤형 인증 정보가 필요하신가요?

수출 초보기업 중 대상기업 선별,
품목별·국가별 인증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.
지금 바로! 문의주세요!

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인증정보 제공 사업

- ▶ 대상기업 해외인증 취득이 필요한 수출 초보기업 100개사 대상

*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미만의 수출 초보기업

▶ 조사내역

- (조사품목) 수출희망품목 중 1개 품목
- (대상국) 해당품목에 대한 수출희망지역 3개국 중 1개국
- (내용) 해당품목에 대한 인증제도 개요, 취득절차·비용, 시험인증기관 등

사업 참가 방법

- ▶ 회신기한 2015. 5. 29일(금)한

- ▶ 회신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조사신청서 1부

- ▶ 회신처 KOTRA 통상지원총괄팀

- 팩 스 : 02- 3460- 7957

- 이메일 : sookkk21@kotra.or.kr

- 문 의 : 통상지원총괄팀 김건숙 전문위원
(02- 3460- 7522)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